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임오경 · 한민수 · 민병덕
김재원 · 장철민 · 임미애
이소영 · 서미화 · 문정복
이기현 · 양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관(官) 주도로 운영되어 지방재정 등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적 성

장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자원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축제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산업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명 등).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관광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축제를 세계에 알려 국민과 외국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특정 집단만 참여하거나 단순 주민 위안 행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문화관광축제”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축제 중에서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3. “글로벌축제”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를 말한다.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란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공공법인

나.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문화관광축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관광축제의 육성 기반조성

제5조(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육성·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축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4.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외 축제개최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문화관광축제 홍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축제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축제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지역축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지원

제9조(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축제의 특성이 뚜렷하고 콘텐츠가 우수할 것
2.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운영능력을 갖출 것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인지도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축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축제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후원과 제13조에 따른 기부금품이 위법·부당한 모집 및 집행으로 확인된 경우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등의 사정으로 축제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글로벌축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축제의 콘텐츠 경쟁력이 있을 것
 2. 글로벌 인지도가 있고 홍보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3. 국내외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글로벌축제의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

조를 준용한다.

③ 글로벌축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후원 등) ①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후원(문화관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금전,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명칭의 표시, 홍보, 인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후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후원을 받을 수 있다.

1. 후원의 금액과 물품의 종류 및 규모
2. 후원의 대상 범위와 자격
3. 자금 및 물품의 집행·관리 방법
4. 사용내역과 잔여분의 처리
5. 후원자에 대한 인정 또는 급부의 범위와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후원계획에 따라 후원받은 결과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원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문화관광축제의 전담조직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기부 및 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문화관광축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및 후원의 수취
 2. 기부금품 및 후원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기부금품 및 후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

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업무·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후원을 받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한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3. 제15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한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축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이 법 제9조에 따른 문화관광축제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